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925
----------	-------

제출연월일 : 2026. 10. 1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9년 12

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2)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및 제36조의3제1항, 안 제31조의6 신설)

- 1)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2)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3)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4)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 5)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생애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2조제3항, 제45조의2 및 제52조의2)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등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8조제1항,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64조제4항, 안 제62조의3제5항 및 제74조제6항 신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부동산 소재 지역별로 차등하여 경감하도록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동산 소재 지역별로 차등하여 경감하도록 함.
-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 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친환경선박 인증 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등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3등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

- 5)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정 규정 마련(안 제33조의3제6항 신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하도록 함.

-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 추정 규정 마련(안 제36조의4제2항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거짓이

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177조제2항)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이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7조”를 “제17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지방세 감면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세입 감소를 유발시키는 지방세 감면

다.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육상해수양식

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제 입주한 사실”을 “실제 입주한 사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의 건축주가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제 입주한 사실”을 “실제 입주한 사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의 건축주가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거주하거나 임대(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수선(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를 추정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생애최초 주택 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 취득일”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또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등”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12억원 이하인 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바. 40세 미만인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등

제36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택의”를 “주택등의”로,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등 부속토지”로,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를 “그 지분을 감면대상 주택등 취득일 전에 모두 처분하였거나 감면대상 주택등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처분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시·군 이외의 지역”을 “시·군·구(통합특별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외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한다.

7. 202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8.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하며,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감면대상 주택등 취득일 전에 처분(해당 주택등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였거나 감면대상 주택등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0조의3제3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을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을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 플러스등급,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

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을 “남은 경감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용재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2조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3조의23 또는 제103조의24에 따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같다]이 2억원 이하인 법인[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일(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창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70)를 각각 감면한다.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0(창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5)을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외의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창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5)을 각각 감면한다.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창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70)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라 자활기업의 인정 이 취소되는 경우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항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로서 조합원 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를 말한다)가 200명 미만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2) 또는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2조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이 경우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를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감면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를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감면한다.

③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를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외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감면한다.

④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를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외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감면한다.

제62조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 항 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

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

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66조제4항 중 “고시된 자동차”를 “고시된 자동차(취득일 현재 고시된 자동차를 말한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14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할 것(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7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 국내
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그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
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
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장”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
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
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주택”으
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하는”을 각
각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7(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1항에 따라 매

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같은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2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같은 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고급주택: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 본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고급오락장: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선박: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선박

②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 2027년 3월 16일

2.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5제1항·제2항, 제31조의6,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3호,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2항·제3항,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4항, 제66조제4항, 제73조제1항 및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된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제7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2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62조의4 및 제6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7년 1월 1일 전에 제14조제1항·제3항, 제14조의3, 제22조의4,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제62조의3제1항, 제62조의4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2조의5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3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의2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77조</u> 에 따른 감면 제외 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u>제177조제1항</u>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5. <u>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5.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가. <u>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u>

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
징한다.

1. 2. (생략)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 2029년 12월 31일-----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2029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

----- 2029년 12월 3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일-----.

② -----

----- 2029
년 12월 31일-----.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illegible]

_____ •

1. _____
 _____ 육상해수
양식업

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 2029년 12월 3
1일-----.

1. · 2. (생략)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④ (생략)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 2029년 12월
31일-----.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 2029년 12월 3
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9년 12월 31일</u>-----.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4. (생략)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 2029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 각각 2029년 12월 31일-----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
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
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2. (생략)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
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1. 2. (생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
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
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
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

----- 2029년 12
월 31일-----.

1. 2. (현행과 같음)

② -----

2029년 12월 31일-----.

1. 2. (현행과 같음)

③ -----

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한다.

④ · ⑤ (생략)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
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
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
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
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
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
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2. (생략)

③ ~ ⑦ (생략)

2029년 12월 31일-----.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실제 입주
한 사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의 건축주가 해당 임
대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
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사
실은 제외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

⑧ -----

----- 2029
년 12월 31일-----

-----.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실제 입주한 사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의 건축주가 해당 임대

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생략)

③ ~ ⑤ (생략)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은 제외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

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②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 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신 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6(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거주하거나 임대(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수선(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
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
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

⑤ -----

----- .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
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또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

----- 주택등-----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 1
2억원 이하인 주택등-----

-----.-----
-----.

1. -----
-----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
7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8호
의 세율-----

-----.

가. ~ 다. (생략)

<신설>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

<신설>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
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
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
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
택 중 오피스텔

마. -----
주택등

바. 40세 미만인 사람이 취
득하는 주택등

2. ----- 주택등-----

-----.

② ----- 주택등
----- 주택등

-----.

③ -----주택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군 이외

-----.

1. ----- 주택등의 -----
-----주택등 부속토지-----

----- 그 지분을
감면대상 주택등 취득일 전
에 모두 처분하였거나 감면
대상 주택등 취득일부터 3개
월 이내에 모두 처분한 경우

2. -----

----- 주택등-----

-- 주택등-----
주택등 -----
----- 주택등 -----

----- 시·군·구(통합특별시

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
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
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나. (생략)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
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
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6. (생략)

<신설>

<신설>

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외의
지역-----.

----- 주택등-----

주택등 -----

----- 주택등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주택등

3. -----

주택등-----

-----.

----- 주택등-----

-----.

4. -----

주택등-----

5.·6. (현행과 같음)

7. 2027년 1월 1일 전에 취득

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

우

8.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하이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하며,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감면대상 주택등 취득일전에 처분(해당 주택등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였거나 감면대상 주택등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④ -----
----- 주택등-----
----- 주택등-----

----- 주택
등-----

----- 주택등-----
-----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생략)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 (생략)

<신 설>

등-----

----- 주택등-----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202
9년 12월 31일-----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전세사기피해

② (생략)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 ----- <u>2029년 12월 31일</u> ----- -----. ⑤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 -----
--	--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생략)

2. 삭제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생략)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현행과 같음)

3. -----

----- 취득세의 100분의 25 -----

----- 재산세의 100분의 25 -----
----- 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지방대학법인의 수익
용기본재산인 토지 위에 202
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
축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

료한 건축물	-----
2. 해당 지방대학법인이 2024 년 1월 1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 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 ----- <u>2029년 12월 31 일</u> ----- ----- ----- -----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 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 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75를 <u>2026년 12월 31일</u> 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 -----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 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	③ ----- ----- -----

2029년 12월 31일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
면) -----

----- 취
득세의 100분의 25를-----

----- 재산세
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1. ~ 6.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신 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건
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 플러스등급,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③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5. (생략)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1. ~ 5.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029년 12월 31일-----.

④ -----

----- 2029년 12월 31일-----
-----.

-----.

⑤ -----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
산을 임대조건부로 2026년 12
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
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
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
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
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
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
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 2029년 12월 31
일-----

-----.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

----- 2029년 12월 31
일-----

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 설>

<신 설>

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
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경감-----.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

<신 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신 설>

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② -----

--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
-----.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신 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③ -----

-----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감-----

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④ (생략)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
 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경감한다.

1. 2. (생략)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
 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
 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
 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
 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
 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한 감면) ① 2029년 12월 31일
 ----- 수도권 외의 지역-----

----- 수도권 외
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1. 2. (현행과 같음)

② 2029년 12월 31일-----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 (생략)

③ ~ ⑦ (생략)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제1항제2호 및 제2
항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
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
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
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
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

⑨ (생략)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남은 경감기간-----

-----.

--- 부동산-----

-----.

⑨ (현행과 같음)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illegible]

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
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
지 감면한다.

2. (생 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 육
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
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중
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
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
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 3. (생 략)

<신 설>

----- 2029년 1
2월 31일-----.

2.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

1. ~ 3.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
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
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직전 사업연도의 과
세표준(「지방세법」 제10
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
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3
조의23 또는 제103조의24
에 따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
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
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같
다]이 2억원 이하인 법인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일(이하 이 조 및 제6
2조의4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의 100분의 85(창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70)를 각각 감면한다.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
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0(창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5)을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외의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창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5)을 각각 감면한다.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
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
의 85(창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70)를 각각 감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
징한다.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
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
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
11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
되는 경우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라 자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
동조합 전국연합회가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
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
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
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
합연합회(이하 이 항에서 “협
동조합등”이라 한다)로서 조합
원 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
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 조
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를 말
한다)가 200명 미만이거나 출
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
인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
호가목2) 또는 같은 호 나목2)

<신 설>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백 원인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2조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

립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
립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
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
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
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이 경우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의 100분의 75[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
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를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외의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감면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의 100분의 75[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를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외의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감면한다.

③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를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감면한다.

④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를 각각 감면한다.

2.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각각 감면한다.

제62조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 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 항 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

업중앙회가 제품의 생산·가공
· 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25를 경감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
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
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
급인 경우: 1천분의 20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
급인 경우: 1천분의 15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
급인 경우: 1천분의 10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생략)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

-----.

--.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
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
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
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
분의 75를 감면한다.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
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감면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고시
된 자동차(취득일 현재 고시된
자동차를 말한다)-----
2029년 12월 31일-----
--- 70만원 -----
----- 70만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
채취득에 대한 감면) ① ----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제8항-----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생략)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

-----.

-----.

1. -----

가. -----
----- 특별시·통합
특별시-----

나. (현행과 같음)

다. -----
----- 특별시·통합
특별시-----

특별시·통합특별시-----

-----.

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생략) ②·③ (생략)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삭제 ③ ~ ⑤ (생략) <u><신설></u>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
--	---

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2.·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5. (생략)

-----.

1.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할 것(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그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4.·5.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
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
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
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
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
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
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
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
전 등에 대한 감면) ① -----

-----.

1. ----- 2029
년 12월 31일-----

-----.

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
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 라. (생략)

2. (생략)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
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
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
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

-----.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 건축물 등
(이하 이 항에서 “사업용 건축
물등”이라 한다)----- <후단
삭제>

1. -----

----- 2029년 12월 3
1일-----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 ④ (생략)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2031년 12월 31일
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
-----.

제167조의7(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 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

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
율에 1000분의 10(같은 법 제1
03조의3제10항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분
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
다.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
법」 제97조의11제2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
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
득에 1000분의 10을 곱하여 산
출한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로 하여 같은 법 제
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 제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 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고급주택: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 본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고급오락장: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

<u>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u> <u>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u> <u>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u>	<u>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u> <u>4. 고급선박: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선박</u> <u>②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u>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적용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 <u>2029년 12월 31일</u>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3년간 총 31,602억원이 추계됨

(단위: 억원)

연 도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구 분						
지출	○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신설·확대	10,848	10,571	10,184	31,602	10,534
	소 계(A)	10,848	10,571	10,184	31,602	10,534
수입	-	-	-	-	-	-
	소 계(B)	-	-	-	-	-
총 비용(A-B)		10,848	10,571	10,184	31,602	10,534

II. 재정수반요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요 재정수반 요인 〉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감면내역)
1	§6①(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 농지 등
2	§6②(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등
3	§7①(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농기계류 등
4	§7②(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5	§9①(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자영어민 어업권, 어선, 양어장, 수조 등
6	§11①(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초기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7	§11②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 부동산
8	§12①(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어업법인 영어·유통·가공 부동산
9	§14①(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등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10	§14③(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역농협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감면내역)
11	§14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12	§19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13	§20①(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무료) 부동산
14	§20①(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경로당
15	§20①(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유료) 부동산
16	§21①(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청소년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17	§21②(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
18	§29①(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대부금 융자 취득 부동산
19	§29②(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사업소 등
20	§29③(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
21	§31⑧(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2	§31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공공주택사업자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축 감면
23	§31의6(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비주거시설
24	§33의3①(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사업주체)
25	§33의3④(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개인수분양자)
26	§36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7	§36의4①·②(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 취득 등
28	§36의4③(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29	§36의4④(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우선매수 취득 등
30	§40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의 의료 외 사업용 부동산
31	§41⑧(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방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취득 부동산 등
32	§42③(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산학협력단 고유업무 부동산
33	§44③(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전공대학 산학협력단 고유업무 부동산
34	§45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기초과학연구원등 고유업무 부동산
35	§47의2①(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36	§47의2②(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37	§47의2③(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38	§47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감면내역)
39	§52의2(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공기관 부동산
40	§57의3③(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개선 중소기업의 자산 관리·매각용 취득자산
41	§57의3④(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후 10년내에 재취득
42	§57의3⑤(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자산 취득 후 재임대하는 부동산
43	§57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상환 연체자 임대주택
44	§58①(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등 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
45	§58②(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집적시설등 입주시 취득 부동산
46	§58③(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자의 산업용 건축물등
47	§58의3①·②(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4년(청년창업 5년)내 취득 부동산
48	§60③(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보육 센터용 부동산
49	§60③(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학교내 센터사업자 창업보육 센터용 부동산
50	§62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62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62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
51	§64④(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친환경선박(1~3등급) 취득
52	§66④(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53	§74⑥(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 재개발 조합 취득 감면
54	§79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55	§80의2①·②(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등
56	§80의2③(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감면
57	§87①(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신용협동조합의 직접사용 부동산
58	§87②(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금고 직접사용 부동산
59	§167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추계 미 실시 사유)
1	§6①(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여	
2	§6②(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여	
3	§7①(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여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추계 미 실시 사유)
4	§7②(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여	
5	§9①(자영업민 등에 대한 감면)	여	
6	§11①(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여	
7	§11②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여	
8	§12①(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여	
9	§14①(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여	
10	§14③(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여	
11	§14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여	
12	§19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여	
13	§20①(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여	
14	§20①(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여	
15	§20①(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여	
16	§21①(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여	
17	§21②(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여	
18	§29①(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여	
19	§29②(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여	
20	§29③(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여	
21	§31⑧(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여	
22	§31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여	
23	§31의6(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부	실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불가
24	§33의3①(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여	
25	§33의3④(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여	
26	§36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	
27	§36의4①·②(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여	
28	§36의4③(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여	
29	§36의4④(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여	
30	§40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여	
31	§41⑧(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여	
32	§42③(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여	
33	§44③(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여	
34	§45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여	
35	§47의2①(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여	
36	§47의2②(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여	
37	§47의2③(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여	
38	§47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여	
39	§52의2(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여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추계 미 실시 사유)
40	§57의3③(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여	
41	§57의3④(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여	
42	§57의3⑤(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여	
43	§57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여	
44	§58①(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여	
45	§58②(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여	
46	§58③(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여	
47	§58의3①·②(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여	
48	§60③(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여	
49	§60③(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여	
50	§62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62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62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여	
51	§64④(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여	
52	§66④(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여	
53	§74⑥(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부	실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불가
54	§79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여	
55	§80의2①·②(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여	
56	§80의2③(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여	
57	§87①(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여	
58	§87②(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여	
59	§167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조문별 감면액(2025년 기준)을 기초로 하여 세수추계를 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부동산 거래 현황 및 세수 신장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감면분야		조항	일몰 기한	연도별 비용 추계액(억원)			
				합계	27년	28년	29년
총 계				31,602	10,848	10,571	10,184
1	자경농민 농지 등	§6①	'29년	2,052	684	684	684
2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등	§6②	'29년	201	67	67	67

감면분야		조항	일몰 기한	연도별 비용 추계액(억원)			
				합계	27년	28년	29년
3	농기계류 등	§7①	'29년	5	1.7	1.7	1.7
4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7②	'29년	20	6.7	6.7	6.7
5	자영어민 어업권, 어선, 양어장, 수조 등	§9①	'29년	13	4.4	4.4	4.4
6	초기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11①	'29년	189	63	63	63
7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 부동산	§11②	'29년	558	186	186	186
8	어업법인 영어·유통·가공 부동산	§12①	'29년	38	12.7	12.7	12.7
9	농협중앙회등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14①	'29년	16	5.3	5.3	5.3
10	지역농협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14③	'29년	1,459	486.2	486.2	486.2
11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14의3	'29년	12	3.9	3.9	3.9
12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19의2	'29년	8	2.7	2.7	2.7
13	노인복지시설(무료) 부동산	§20①	'29년	1,420	473.3	473.3	473.3
14	경로당	§20①	'29년	44	14.7	14.7	14.7
15	노인복지시설(유료) 부동산	§20①	'29년	108	36	36	36
16	청소년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21①	'29년	11	3.5	3.5	3.5
17	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	§21②	'29년	9	3	3	3
18	국가유공자 대부금 융자 취득 부동산	§29①	'29년	312	104	104	104
19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사업소 등	§29②	'29년	12	4	4	4
20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	§29③	'29년	9	3	3	3
2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31⑧	'29년	0	0	0	0
22	공공주택사업자 신축매입약정 임대 주택 건축 감면	§31의5	'29년	1,549	830	553	166
23	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비주거시설	§31의6	'27년	0	0	0	0
24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사업주체)	§33의3 ①	'27년	0	0	0	0
25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개인수분양자)	§33의3 ④	'27년	0	0	0	0
26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36의3	'29년	13,707	4,569	4,569	4,569

감면분야		조항	일몰 기한	연도별 비용 추계액(억원)			
				합계	27년	28년	29년
27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 취득 등	§36의4 ①·②	'29년	81	27	27	27
28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36의4 ③	'29년	0	0	0	0
29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우선매수 취득 등	§36의4 ④	'29년	114	38	38	38
30	대한적십자사의 의료 외 사업용 부동산	§40의3	'29년	5	1.5	1.5	1.5
31	지방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취득 부동산 등	§41⑧	'29년	0	0	0	0
32	산학협력단 고유업무 부동산	§42③	'29년	6	2	2	2
33	전공대학 산학협력단 고유업무 부동산	§44③	'29년	0	0	0	0
34	기초과학연구원등 고유업무 부동산	§45의2	'29년	105	35	35	35
35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47의2 ①	'29년	0	0	0	0
36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47의2 ②	'29년	171	57	57	57
37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47의2 ③	'29년	126	42	42	42
3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47의5	'29년	21	7	7	7
39	문화예술·체육진흥 공공기관 부동산	§52의2	'29년	38	12.5	12.5	12.5
40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개선 중소기업의 자산 관리·매각용 취득자산	§57의3 ③	'29년	48	16	16	16
4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후 10년내에 재취득	§57의3 ④	'29년	48	16	16	16
4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자산 취득 후 재임대하는 부동산	§57의3 ⑤	'29년	9	3	3	3
4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상환 연체자 임대주택	§57의4	'29년	0	0	0	0
44	벤처기업집적시설등 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	§58①	'29년	62	20.7	20.7	20.7
45	벤처기업 집적시설등 입주자 취득 부동산	§58②	'29년	11	3.7	3.7	3.7
46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자의 산업용 건축물등	§58③	'29년	0	0	0	0
47	창업(벤처)중소기업 4년(청년창업 5년)내 취득 부동산	§58의3 ①·②	'29년	1,143	381	381	381
48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보육 센터용 부동산	§60③	'29년	3	0.9	0.9	0.9
49	학교內 센터사업자 창업보육 센터용 부동산	§60③	'29년	25	8.3	8.3	8.3

감면분야		조항	일몰 기한	연도별 비용 추계액(억원)			
				합계	27년	28년	29년
50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	§62의3 §62의4 §62의5	'29년	222	74	74	74
51	친환경선박(1~3등급) 취득	§64④	'29년	33	11	11	11
52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66④	'29년	5,736	1,912	1,912	1,912
53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 재개발 조합 취득 감면	§74⑥	'29년	0	0	0	0
5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79의2	'29년	234	78	78	78
55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등	§80의2 ①·②	'29년	66	22	22	22
56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감면	§80의2 ③	'29년	1,140	380	380	380
57	신용협동조합의 직접사용 부동산	§87①	'29년	163	54.4	54.4	54.4
58	새마을금고 직접사용 부동산	§87②	'29년	242	80.7	80.7	80.7
59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167의 2	'29년	0	0	0	0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사용된 전제가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신지희 사무관	한송희 서기관	이현정 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지희	044-205-3852	caitlynjj@korea.k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 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주민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세제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세수 감소분에 대해 감내할 필요가 있음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해 당 없 음			
○ 회계·기금 간 전입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기타				
〈합 계〉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없 음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기타				
○				
〈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 없음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 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 없음

Ⅳ. 부대의견

☐ 해당 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 당 없 음		

Ⅵ. 작성자

☐ 성명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신지희 사무관	한송희 서기관	이현정 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지희	044-205-3852	caitlynjj@korea.kr